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성대 의원 대표발의】

2023. 9. 6.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경과

- 의안번호 : 제391호
- 안 건 명 :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발 의 자 : 김성대, 이태훈, 최정훈, 유상용, 박병천, 박용규, 김종필, 안지윤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2. 제안이유

- 올림픽과 함께 2대 국제스포츠종합경기로 꼽히는 세계 대학생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세계적인 행사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 기반시설 및 대회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상황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함
- 대회 폐회 이후 체육 기반 시설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4개 시·도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계 대학생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대회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함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동 위원회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 기반 시설 현장 점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12명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함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4. 검토의견

가.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560만명의 충청인 염원을 한데 모아 유치에 성공하여 충청권 사상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이며 참가 인원은 150여 개국 1만 5000명 규모임
- 2027년 8월 중 충북 11개소, 충남 12개소, 대전 4개소, 세종 3개소 등 4개 시·도 30개소의 경기장에서 공동 분산 개최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 2조 7000억원, 취업 유발 1만명, 고용 유발 7000명 등 직·간접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6월 공식 출범하여 조직 운영, 자원 조달, 경기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성공적인 국제대회 준비, 개최, 운영 등을 위해 선수단 환영식, 개막식, 경기장 설치, 선수촌 운영 등 기능별 준비사항을 시찰하고 추진과정 점검, 대회 관련 현안사항 적극 대응 등을 위해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의 타당성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회는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동 특별위원회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 기반시설 현장 점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원정수, 활동기간 등 구성요건 적합성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같은 조례 제36조 규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가 13명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 효율적인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위원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을 위해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 12명 이내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에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함에 따라 같은 조례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특별위원회는 명확하게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임기 및 특별위원회 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동 특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제출해야 할 것임